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신종갑 의원)

의안 번호	23-7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6. .

발 의 자 : 강동오, 고병준, 권영숙,  
남해석, 신종갑, 최은하,  
홍지광

## 1. 제정이유

마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
다.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
라.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0조)

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사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### 3. 관계법령

- 1)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4조
- 2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

### 4. 조 례 안 : 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붙임

### 6. 기타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
- 나. 입법예고: 2023. 5. 19. ~ 5. 24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(ESG)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에스지(ESG) 경영”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거버넌스(Governance)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.
2. “중소기업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3. “산하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“마포구”라 한다)가 설립한 지방공기업
  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이에스지(ESG)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
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,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기본계획)**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이에스지(ESG)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
2. 이에스지(ESG)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, 운영지침, 실태, 평가 및 관리방안,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마포구 등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.

**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**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이에스지(ESG) 경영 홍보 및 교육
2. 이에스지(ESG)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
3. 환경, 사회,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
4. 이에스지(ESG)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
5. 그 밖에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)**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
2.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
3. 이에스지(ESG)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
4.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

**제9조(성과평가 및 혜택)**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, 포상,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.

**제10조(지도·감독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·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,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·감독하는 경우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을 지도·감독하는 경우

**제11조(협력체계 구축 등)**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내·외 기업, 기업 협의체, 연구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2조(표창)**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지속가능발전 기본법

[시행 2022. 7. 5.] [법률 제18708호, 2022. 1. 4., 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구현, 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,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·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,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2. 11. 15.] [법률 제19044호, 2022. 11. 15., 타법개정]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25.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(ESG) 경영활성화에 관한  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안정현
연 락 처	02-3153-8575